

2014년 3월 24일 Vol. 14 No. 1 ISSN 1976-0515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김영귀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팀장 (ygkim@kiep.go.kr, Tel: 3460-1188) 이효영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hylee@kiep.go.kr, Tel: 3460-1271)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Tel: 3460-1058)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



차 례 ●●●

- 1 머리말
- 2. 상품 분야
- 3. 서비스 분야
- 4. 투자 분야
- 5. 규범 분야
- 6. 맺음말

주요 내용 ●●●

- ▶ 한·미 FTA로 인한 對미 수출은 18.18%, 對미 수입은 14.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과 FTA 활용율도 개선되는 등 양국간 상품교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산업별 맞춤형 활용대책 및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22개월 동안(2012년 3월~2013년 12월) 對미 수출입은 각각 발효 전 동기대비 12.16~5.51% 변화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효과는 각각 18.18%와 14.0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를 감안하면, 한·미 FTA로 인한 수출입 증가는 양국간 수출입 물량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요인별 분석결과, 對미 수출은 화학, 금속, 기타 기계에서는 주로 관세 외 효과가 전자와 자동차, 부품에서는 관세효과가 크게 나타나 산업별로 차별화된 활용대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걸쳐 양국간 교역하는 품목 수가 각각 210개와 268개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어 한 · 미 FTA로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과 함께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은 62.2%, 수출은 47.7%에 그치고 산업별로 편차가 커 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상황임.
- ▶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도의 선진화와 최근 활발한 글로벌 통상규범 재편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 개방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국내적으로는 법률분야 외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나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은 운송, 지재권, 기타 사업 등 분야에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실 적은 주로 운송기기와 금융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음.
- 상품교역에서의 대미 수출입 증가와 함께 미국의 대한 투자증가로 인한 순요소소득 지급 및 서비스 지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로 인한 양국간 총체적 경상수지 효과는 다소 복합적임.
- 의약품, 자동차, 금융정보 이전, 유기식품 인증제도 등 규범분야에서는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이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국제통상질서 변화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한·미, 한·EU FTA가 이 협상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양국은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과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1. 한·미 FTA 발효 이후 공동위원회, 분이별 위원회 및 직업반 회의 주요 결과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2012년 5월 16일)	- '공동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¹⁾ 채택, '분쟁해결 모범절차 규칙' 합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 회, 서비스·투자위원회, 중소기업작업 반 (2012년 6월 7~8일) 한·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회의 (2012년 7월 5일)	 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협정상의 의무이행 평가 및 세관분야의 협력사항 무역구제위원회: 무역구제 조항의 국내적 이행 현황 점검 서비스투자위원회: 국경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분야의 양측 관심사항 논의 ISD: 추후협의에 대한 양측의 기초적인 의견 교환 중소기업작업반: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보 교환 FTA 이행상황 점검 및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농산물위원회, 섬유의류위원회, 정부조달 작업반 (2012년 11월 7~8일)	 - 농산물위원회: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 교역현황 교환, 저율할당관세(TRQ: Traiff Rate Quota) 적용품목의 2012년 이행 현황 점검 - 섬유의류위원회: 섬유류와 관련된 미국 측 통관절차 협의, 우리나라 섬유류 제조자의 생산자 정보제공 준비와 관련한 세부 사항 논의 - 정부조달작업반: 미 정부조달제도의 투명성 강화 노력 논의
한·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회의 (2012년 11월 28일)	-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 양국간 규제협력방안 논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회의;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무역에대한기술장벽(TBT)위원회, 자동차작업반(2013년 6월 10~11일)	전문직서비스작업반: 활동계획 및 기술사, 수의사 및 건축사 등 관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격 인정관련 양국 절차 논의 무역에대한기술장벽(TBT)위원회: 전자제품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 관심사항, 투명성 증진 방안, 다자포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자동차작업반: 양국의 자동차 분야 기술표준·규정 등 관련 주요 동향과 투명성 관련조항 이행 논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무역구제위원회, 중소기업작업 반 (2013년 6월 27일)	무역구제위원회: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법령·정책관련사항, 무역구제 분야 협력 논의 중소기업작업반: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상품무역 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2013년 11 월 4~5일)	상품무역위원회: 양국간 상품 교역, 원산지 및 통관분야 협정 관련사항 및 세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보건의료제도 관련 상호 이해를 심화, 양국간 규제협력 방안 논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성공단 및 남북협력 현황에 대해 의견 교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

주: 1) 공동위원회 의사규칙 주요 내용은: ① 공동위 구성, ② 의제 및 공동위 결정, ③ 수석대표 회의 설치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 자료: 한·미 FTA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이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함.
- 한·미 FTA는 거대 경제권과 사실상 완전한 자유무역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분야에서 국내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양국간 상품 무역 및 서비스, 투자, 규범 분야에서의 성과와 국내제도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발효 2년차 한·미 FTA를 평가하고자 함.
- 다만 한·미 FTA를 통해 기대했던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의 영향이 발현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과정에서의 국내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춤.

2. 상품 분야

가. 상품 일반

- 1)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 현황
- 한국의 對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은 2012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음.
- 수출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621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011년 446억 달러에서 감소추이를 보여 2013년 기준 415억 달러로 감소
-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에는 2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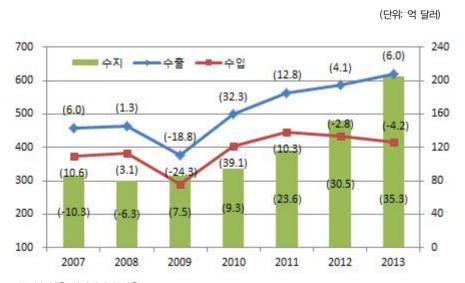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對미 교역 현황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4년 3월 3일 접속.

2)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규모 변화

- 한·미 FTA 발효 이후 22개월간(2012년 3~2013년 12월) 한국의 對미 수출은 발효 이전 동기대비 12,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5.51% 감소함.
- 같은 기간 미국의 對주요국 수입은 EU가 9.68%로 가장 낮고, 일본이 12.39%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對주요 국 수입은 일본이 -7.94%로 가장 낮고, EU가 19.79%로 가장 높았음.

표 2. 한·미의 對주요국 수입(2010. 3~2011. 12과 2012. 3~2013. 12간 중감률)

(단위: %)

한국의 對	주요국 수입	미국의 對주요국 수입			
미국	△5.51	한국	12.16		
아세안	3,63	캐나다	10.52		
중국	0.35	중국	10.83		
EU	19.79	EU	9.68		
일본	△7.94	일본	12.39		
		멕시코	11.87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기반하여 필자 계산.

- 한국의 對미 수출입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한·미 FTA 발효로 인한 對미 수출은 18.18%, 對미 수입은 14.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즉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對미 수출을 발효 전 동기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12.16% 증가했으나, 요인별 분석결과 한·미 FTA로 인한 수출증가는 18.18%로 분석됨.
- 이는 하·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하국의 對미 수출은 오히려 6.02% 감소했었을 것임을 의미한
- 한·미 FTA의 관세효과는 0.00%, 관세 외 효과는 18.18%로 나타나, 발효 2년 차까지의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반면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제도 개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등 전반적인 무역환경의 개선 요인으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 ㅇ 對미 수출에서 환율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그 크기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관세효과는 화학에서 49.34%, 자동차 부품에서 1.12%로 추정되었고, 관세 외 효과는 화학, 금속, 기타기계 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미 FTA 발효 후 對미 수입은 5.51% 감소했으나, 한·미 FTA 효과는 14.80%로 사실상 한·미 FTA 로 인한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즉 한·미 FTA가 없는 상황에서는 對미 수입이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임을 의미함.
- 對미 수입에서도 환율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한·미 FTA의 효과는 자동차와 부품에서 가장 높은 164.85%, 그 다음으로는 전자(35.12%), 섬유(11.74%), 기 타제조업(18.41%) 순으로 나타남.



표 3. 한국의 對미 수출입 변화 분해(2010. 3~2011. 12과 2012. 3~2013. 12간 중감률)

(단위: %)

			한국의	對미 수출		한-	국의 對미 수	-입
	산업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I	'A 효과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신남	<u>중 중심필</u>		관세 외 효과	관세효과	<u>중 중심 필</u>	원필보시	FTA 효과
	농림수산광업	△14.56	_	_	△1.46	△50.65	_	
	섬유	5.10	0.00	_	0.00	△14.94	_	11.74
	화학	9.44	0.00	94.25	_	6.32	0.00	_
제	금속	39.37	_	57.30	0.00	8.95	_	27
조	기타기계	21.61	_	47.26	_	△1.46	_	_
업	전자	△23.40	_	_	24.43	12.11	_	35.12
	자동차와 부품	45.71	△0.00	_	205.37	51.24	_	164.85
	기타제조업	4.48	0.00	_	0.00	△9.29	_	18.41
	전체	12.16	0.00	18.18	0.00	△5.51	0.00	14.80

주: -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며, 0.00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그 크기가 미미한 경우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 및 추정 결과에 기반하여 필자 추정

글상자 1. 한·미 FTA의 수출입 효과 추정 및 요인별 분해방법

-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실질실효환율, 관세율, 한·미 FTA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의 對미 총 수출입 변화를 한·미 FTA 등 요인별로 분해함.
- 분석자료는 EU(27개국)의 자료가 확보 가능한 2007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HS코드 6단위 품목별 수입액을 사용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 미국의 상대국으로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EU, 중국, 일본을 고려
- 수입상대국의 실질실효환율, 관세율, 각국의 기체결 FTA와 한·미 FTA 더미 변수(한미 상대국에 대해 2012년 3월 이전 (), 이후는 1)를 포함하는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함. 관세율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더미는 관세 외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효과가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교역증대에 미친 영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모형에 국별 더미포함, 환율의 시차변수 포함 등 총 5개의 다른 모형을 설정한 뒤 추정하였으며, 한·미 FTA의 對미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추정분석에 기반하여, 한·미 FTA 발효 전후 22개월(2010년 3월~2011년 12월과 2012년 3월~2013년 12월) 수 출입변화율을 계산하고, 같은 기간 실질실효 환율변화분, 관세율 변화분과 각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요인별 효과를 계산함.
-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교역 조건 추이를 감안하며,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변화는 가격변동에 의한 효과보다 수출물량의 증감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순상품 교역지수는 2007년 이후 2008~09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에는 안정화 추세를 시현하고, 소득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교역조건의 악화 내지 안정속에서 수출물량 확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을 전후로는 순상품교역조건은 안정적인 반면, 소득교역조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분석된 한·미 FTA로 인한 수출입 효과는 양국가 수출물량 확대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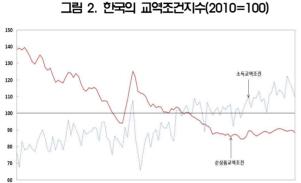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교역조건 전년동월대비 변화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4년 1월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3)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양성 변화

- 2011년과 2013년 수출입 품목을 이용하여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대한 한국의 對미 교역품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출에서는 247개 품목이, 수입에서는 231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 ·미 FTA가 양국간 무역의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표 4 참고).
- 2013년에 교역이 새롭게 시작된 품목(증가(2))은 수출의 경우 화학(152개 품목), 금속(105개 품목), 기타기계 (109개 품목) 등에서, 수입의 경우 화학(176개 품목)과 기타기계(110개 품목) 등에서 많음.
- 2013년에 교역이 사라진 품목(감소①) 역시 수출의 경우 화학(137개 품목), 금속(82개 품목), 기타기계(98개 품목) 등에서, 수입의 경우 화학(127개 품목)과 기타기계(74개 품목) 등에서 많음.
- 그러나 교역이 사라진 품목보다 새롭게 시작된 품목의 수가 많아 추가로 교역이 증가한 품목(증감③)은 수출의 경우 금속(23개 품목)에서, 수입의 경우 화학(49개 품목)에서 많게 나타남.
- 다만 기타제조업의 경우 다수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예외로 함.
- 2012년과 2013년 수출입 품목을 비교하면, 발효 1년차에 수출입 품목수가 각각 113개, 97개 증가하였으며 발효 2년차에도 각각 134개 증가하여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기간인 2012년과 2013년의 한국의 對미 교역품목을 비교한 결과 2013년에 수출입 모두 각각 134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입 다양성의 확대가 발효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¹⁾ HSK 10단위를 이용함.



- 2013년에 교역이 새롭게 시작된 품목과 사라진 품목은 모두 2011년과의 비교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나 교역이 증가한 품목 역시 수출의 경우 금속(34개 품목)에서, 수입의 경우 화학(37개 품목)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2년과의 비교의 경우 2013년에 교역이 사라진 품목의 수가 새롭게 시작된 품목의 수보다 많은 경 우가 존재하여 수출의 경우 화학(18개 품목)에서, 수입의 경우 농림수산광업(15개 품목)에서 교역되는 품목의 수가 다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한국의 대미국 수출입 품목 수의 변화2)

(단위: 개)

			001013	001013	20	11년과 2	013년 비	교	20	12년과 2	013년 비	교
	산 업	2011년 품목 수	2012년 품목 수	2013년 품목 수	감소①	증가②	중감3	전체 중감 ④	감소①	증가②	중감3	전체 증감④
	농림수산광업	215	245	263	38	58	20	48	40	51	11	18
	제조업	5,188	5,346	5,473	610	837	227	285	632	755	123	127
	섬유제품	391	406	415	53	73	20	24	59	66	7	9
	화학	907	946	924	137	152	15	17	148	130	-18	-22
수 출	금속	616	619	655	82	105	23	39	67	101	34	36
출	기타기계	763	767	773	98	109	11	10	90	93	3	6
	전자	189	193	203	12	21	9	14	16	25	9	10
	자동차와 부품	70	65	71	12	11	-1	1	7	12	5	6
	기타제조업	2,252	2,350	2,432	216	366	150	180	245	328	83	82
	수출 총계	5,403	5,591	5,736	648	895	247	333	672	806	134	145
	농림수산광업	432	483	470	51	53	2	38	77	62	-15	-13
	제조업	7,630	7,772	7,934	533	762	229	304	521	670	149	162
	섬유제품	439	450	466	51	78	27	27	59	72	13	16
	화학	1,792	1,814	1,860	127	176	49	68	124	161	37	46
수 입	금속	833	845	848	48	62	14	15	41	50	9	3
입	기타기계	899	918	943	74	110	36	44	73	98	25	25
	전자	238	239	233	9	9	0	-5	7	4	-3	-6
	자동차와 부품	107	108	112	5	9	4	5	5	8	3	4
	기타제조업	3,322	3,398	3,472	219	318	99	150	212	277	65	74
	수입 총계	8,062	8,255	8,404	584	815	231	342	598	732	134	149

주: 1) ①은 비교연도 모두의 교역 대상품목 중 2013년에만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품목.

4)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활용률 분석

- 2013년 중에도 2012년 3~12월에서와 같이 한국의 수입 활용률은 62.2%로 수출 활용률 47.6% 보다 높아 對미 수입에서 한·미 FTA를 보다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 참고).
-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수입 활용률의 경우 52.4%에서 62.2로, 수출 활용률의 경우 41.7%에서 47.7%로 증가

²⁾ ②는 비교연도 모두의 교역 대상품목 중 2013년에만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는 품목

³⁾ ③은 비교연도 모두의 교역 대상품목 중 수출입 품목의 변화로 ②-①과 같음.

⁴⁾ ④는 특정연도에만 존재하는 품목을 포함한 수출입 품목의 변화 5) 분석기간은 매년 3~12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계산.

²⁾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버전 3의 2단위를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함.



- 특히 수입 활용률의 경우 자동차와 부품에서, 수출 활용률의 경우 전자에서 한·미 FTA를 활용한 경우가 2013년에 들어 크게 증가함.
- 한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동차와 부품의 경우에만 수출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 이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함을 의 미합
- ※ 활용률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수입액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5. 한·미 FTA 관세 활용률

(단위: %)

	한국	의 對미 수입 횥	용률	미국	의 對한 수입 횥	용률
산 업	2012년 3~12월	2013년 3~12월	2013년 1~12월	2012년 3~12월	2013년 3~12월	2013년 1~12월
농림수산광업	85.9	89.0	87.1	86.1	90.9	91.1
제조업	50.0	60.4	60.5	41.6	47.6	47.6
섬유제품	39.9	47.8	48.2	62.4	62.3	62.6
화학	59.9	75.3	75.4	77.3	88.9	88.6
금속	43.1	43.3	44.5	64.7	72.7	73.6
기타 기계	29.8	36.1	35.7	65.6	76.3	75.7
전자	28.9	29.8	29.8	50.9	64.3	64.1
 자동차와 부품	50.0	82.2	80.6	19.2	24.4	24.0
기타 제조업	52.0	60.9	60.8	48.0	52.7	53.9
전 산업	52.4	62.2	62.2	41.7	47.7	47.6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3. 서비스 분야

-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서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방하고, 그 외의 분야는 기존의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한·미 FTA를 체결함.
- FTA 발효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회계서비스는 한·EU FTA 와 동일한 단계적 개방(법률서비스 3단계 개방, 회계서비스 2단계 개방)을 약속하고,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개방을 하기로 약속함.
-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들어 동 협정에 따라 법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 약속의 이행이 이루어짐.



표 6.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 약속

	# 0. E - FITA NEL ET ## 710 44										
분야		한미 FTA 타결 내용	근거조항								
	1단계	협정 발효일 이전에 미국 자격 취득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FLC)로 법률 (미국법·국제공법)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	한·미 FTA 서비스								
법률	2단계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의 제휴 허용	협정문, 한국의 미래유보(Annex II)								
	3단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미국 법무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합작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	, , , ,								
	1단계	협정 발효일 이전에 미국 내에 등록한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 계컨설팅 서비스 공급을 허용하고 미국 등록 미국 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 하는 것을 허용	한·미 FTA 서비스								
회계	회계 2단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미국 내에 등록한 미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해야 하며, 미국 등록 미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미만까지만 보유 가능	협정문, 한국의 미래유보(Annex II)								
통신	협정발호 허 용	호일 후 2년 이내에 KT,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를 100%	한·미 FTA 서비스 협정문, 한국의 현재유보(Annex I)								
	접투자를	효일 후 3년 이내에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간를 100% 허용	el el pm. alula								
방송		효일 이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에 대한 채널별 연간 분야(애니메이션)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애니메이션 30%, 영화 20%)으	한·미 FTA 서비스 협정문, 한국의 현재유보(Annex I)								
		효일 이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의 외국 콘텐츠 분 체 편성시간에서 1개국 콘텐츠 한도를 확대(60% 이내 → 80% 이내)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미 FTA 이후 개방 약속이 이행된 사항을 나타냄. 굵은 글씨는 협정 발효 2년차에 이행된 개방 약속을 의미함.

- 법률서비스의 경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1단계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협정 발효 2년차에 2단계 개방을 이행하였음.
-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09년 9월 26일 시행)에 따라 한·EU FTA 및 한·미 FTA 법률 서비스 단계적 개방 약속을 이행 중임.
- 1단계 개방 약속 이행: 외국법자문사의 법률(미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서비스 제공을 허용(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제9조(자격승인 조항) 및 제10조~제14조(등록 조항))하고, 미국 법률회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제16조(설립인가 조항) 및 제18조(등록 조항))함.
- 2단계 개방 약속 이행: 외국법자문사법 개정(2011년 4월 30일)을 통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률회사 가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제휴)을 허용(동법 제34조의2)함.
- 2014년 2월 현재 미국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총 14개이미,

³⁾ 그 외에 영국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4개로, 현재 국내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전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8개임.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법률사장 개방(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 100000&strRtnURL=MOJ_10205010 등재자료 중「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목록」(2013년 8월 19일 기준) 참고 법무부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는 52명4)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법률회사 및 변호사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5)

- 업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2단계 개방까지는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3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국내외 법률회사간 경쟁과 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회계서비스의 경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2단계 개방 이행은 2017년 3월 15일 이전까지 이행해야 함.
- 한·미 FTA 회계서비스 시장개방 약속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한·EU FTA가 먼저 발효(2011년 7월 1일)됨에 따라 한·EU FTA 발효 시기를 기준으로 회계서비스 시장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한·EU FTA 및 한·미 FTA 회계서비스 1단계 개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 6월 공인회계 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
-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조항에 2단계 개방 약속을 이행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 단계 개방 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⁶⁾
- 2014년 2월 현재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미국 회계법인은 전무하며, 미주지역 최대 한인 회계법인인 CKP가 2014년 3~4월에 한국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무소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7)
-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FTA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는 제외)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를 100% 허용할 것을 약속(단, 공익성심사 통과 필요)하였으며, 동일한 개방 약속을 포함하는 한·EU FTA 이행을 위해 2013년 7월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8월13일부터 시행됨.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하여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를 100% 허용(전기통신사업법 제8조)함.
-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에 대한 채널별 연간 분야(애니메이션과 영화)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으로 부분 축소(영화 25% ⇒ 20%, 애니메이션 35% ⇒ 30%)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의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에 따르면 2013년 8월 19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⁴⁾ 그 외에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가 12명으로, 현재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는 모두 64명임.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법률시장 개방(http://www.moj.go.kr/HP/MOJ03/menu.do? strOrgGbnCd=100000&strRtnURL=MOJ 10205010) 등재자료 중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2014년 2월 21일 기준) 참고

⁵⁾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한국 사무소 설립 현황을 보면 협정 발효 1년차까지 총 13개가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1개만 추가로 설립 인가를 받음. 반면, 변호사는 협정 발효 1년차에 33명이, 그리고 2년차에 19명이 자격승인을 받음.

⁶⁾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조항 또한 한 미 FTA 이전에 발효된 한 EU FTA에 따라 도입된 것임. 단, 이 조항은 2011년 6월 30일 신설되었으나 한 EU FTA 2단계 개방 일정에 따라 2016년 7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⁷⁾ 매일경제, 2014년 2월 9일 기사, 「美 회계법인 한국 첫 진출: CKP, 이르면 내달 영업…국제조세 등 특화」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09363.



편성시간 내에서 1개국의 콘텐츠 한도를 확대(60% ⇒ 80%)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51호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고시하고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함. 다만, 2012~13년 방송서비스 분야별 콘텐츠 편성비율 통계가 유용하지 않아 한·미 FTA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음.
- 한편, PP(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100% 허용은 한·미 FTA 발효 3년 이내에 허용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한·미 FTA 발효 2년이 경과한 현재,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진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외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통신서비스의 경우 동 협정의 발효 3년차부터 공익성심사 통과 시 KT,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가 100% 허용되고, 방송서비스 또한 동 협정의 발효 4년차부터 PP(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제외)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가 100% 허용될 예정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2000~12년간 대세계 및 대미 서비스 수지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미 FTA 발효로 운송, 지재권, 기타사업 서비스에서의 양국간 교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서비스산업의 점진적 개방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2011~12년간 대미 서비스 교역 증가율이 같은 기간 대세계 증가율보다 크고, 지난 10년간의 대미 연평균 증가율 및 2010~11년 증가율보다도 큰 분야는 운송, 여행, 지재권, 기타사업 등임.
- 이 중 한·미 FTA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는 운송, 지재권, 기타사업(무역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등 컨설팅 등)이며,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증가는 운송, 기타사업에서 지급증가는 지재권과 기타사업에서 발생하였음.

				표 /. 네미, '	내세계 저미스	: ты			
			對人	세계			對	п]	
		금액	증기율	증기율	증기율	금액	증기율	증기율	증기율
		(2012)	('00~'12)	('10~'11)	('11~'12)	(2012)	('00~'12)	('10~'11)	('11~'12)
서비스수	-지	-52.14	15.02	-13.76	-57.54	-117.15	16.38	-12.74	9.12
서비스	수입	1030.19	10.04	9.18	13.33	168.28	4.48	13.65	16.55
서비스지급		1082.33	10.23	5.83	4.90	285.43	7.60	0.67	13.38
가공	수	25.67	4.04	-3.99	17.40	4.95	-4.45	-7.04	-5.38
/18	지	92.20	23.71	34.41	-2.30	0.09	7.32	16.96	-30.53
운송	수	415.91	9.61	-5.18	11.85	56.70	3.84	-10.75	20.40
工。	지	314.14	8.73	1.08	1.94	59.37	4.04	3.27	-3.41
서취	수	134.29	5.79	20.79	7.64	15.42	3.11	-17.38	56.06
여행	지	206.45	9.26	6.15	3.64	61.31	10.48	6.83	12.87

표 7 대미 대세계 서비스 교열



			對人	 세계				п	
		금액 (2012)	중가율 ('00~'12)	증가율 ('10~'11)	증가율 ('11~'12)	금액 (2012)	증가율 ('00~'12)	증기율 ('10~'11)	증가율 ('11~'12)
니쉬	수	4.90	17.85	0.66	-5.54	1,63		-150.15	-0.31
보험	지	7.94	15.16	-22.23	15.72	1.80	25,66	-21.38	18.37
الدارد	수	39.03	15.38	37.97	-11.28	11.80	32.95	97.42	-24.91
지재권	지	86.17	8,33	-19.25	16.20	60.46	9.84	-21.03	32.47
트기키니	수	10.83	12.73	27.87	-17.87	3.24	9.01	19.93	-11.80
통신정보	지	10.82	10.61	6.44	-29.52	3.97	10.10	34.33	-8.83
기디기어	수	162.95	6.97	16.67	19.84	57.23	4.31	25.05	34.04
기타사업	지	290.65	9.63	8.00	12.75	77.28	5.94	10.88	18.93
기버	수	12.35	3.82	17.48	3.39	9.73	3.16	19.19	-5.85
정부	지	9.52	6.96	19.32	-16.20	3.03	5.40	24.33	-37.62
الحال	수	224,27	26.48	28.45	24.42	7.60	14.20	33.10	-6.61
기타	지	64.45	24.81	31.85	-0.18	18.11	21,63	2,53	25.22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미 서비스 교역의 2010~11년간 변화율과 2011~12년간 변화율의 차이가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 변화율보다 큰 경우를 나타냄. 즉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 방식으로 대미 교역과 대세계 교역을 비교하여 대미 교역에서 증가율이 더 큰 경우임.

4. 투자 분야

- 한국의 대세계 및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기간(2012년 4월~2013년12월) 동안 각각 285억 달러와 68억 달러를 유치하여 FTA 발효 이후 유치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표 8 참고).
- 한국의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직후(2012년 4~12월) 전년동기대비 70.5% 증가하였으나 발효 이후 2013년 1~12월 중에는 4.1%, 4~12월 중에는 4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발효 직후 투자유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발효 이후 전 기간의 투자유치는 전년동기대비 57.3% 증가
- 2013년 한국의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4~12월 투자유치가 1~12월 투자유치의 절반 수준으로 1~3월에 투자유치가 집중된 것임.
- 한편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대세계 투자와 비교하여 유치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2012년 4~12월 및 2012년 4월~2013년 12월 중 투자증가는 대미국에서, 2013년 1~12월 중 투자감소는 대세계에서 높게 나타남.



표 8.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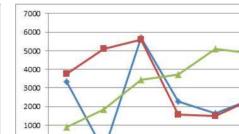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신고금액기준)

	2010년 2011년			 1년	201	 2년	201	발효 이후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전 기간
대세계	13,071 (13.8)	11,530 (17.6)	13,673 (4.6)	11,668 (1.2)	16,286 (19.1)	13,940 (19.5)	14,548 (-10.7)	11,154 (-20.0)	28,488 (13.0)
대미국	1,975 (32.8)	1,935 (71.4)	2,372 (20.1)	1,904 (-1.6)	3,674 (54.9)	3,247 (70.5)	3,525 (-4.1)	1,824 (-43.8)	6,773 (57.3)
비중	15.1	16.8	17.3	16.3	22.6	23.3	24.2	16.3	23.8

주 1) 발효 이후 전 기간은 2012년 4월~2013년 12월 투자를 의미하며 증감률은 2010년 4월~2011년 12월과의 비교임.

■ 자본수지 중 주요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변화를 살펴보면, 2011~12년간 대미 직접투자는 대일본이나 대EU 직접투자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국과의 투자관계가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 주요국의 대한 직접투자(자산, 백만 달러)



2008

2009

→ 미국 → EU → 일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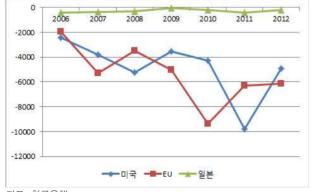
2011

2012

2006

-1000

그림 5. 한국의 대주요국 직접투자(부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 미국의 대세계,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비교하면, 한·미 FTA로 인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증가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의 대세계 및 대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투자가 각각 9.0%와 7.4% 증가한 데 반해 대한국 투자는 16.5% 증가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³⁾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대미국이 차지하는 것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통계(http://www.mk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 jsp. 2014년 3월 6일 접속).



표 9.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position기준)

		· · · · · · · · · · · · · · · · · · ·	
	2010년	2011년	2012년
대세계	3,741,910	4,084,659	4,453,307
	(5,0)	(9,2)	(9,0)
대아시아태평양	570,111	606,174	651,305
	(13.4)	(6.3)	(7.4)
대한국	26,233	30,160	35,125
	(9,6)	(15.0)	(16.5)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통계국(http://www.bea.gov/index.htm, 2014년 3월 18일 접속).

-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기간(2012년 4월~2013년 12월)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는 모든 대분류 산업에서 나타남(표 10 참고).
- 제조업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전 기간 중 27.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전년동기대비 12.4억 달러의 투자유치가 증가
- 특히 운송기기의 경우 FTA 발효 이전 대미국 투자유치는 1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발효 이후 8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어 FTA 발효 이후 전 기간 동안 16억 달러가 증가
- 이와 달리 전자에 대한 대미국 투자유치는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4~12월 중 전년동기대비 3.2억 달러가 감소한 이후 2013년 1~12월 중에도 1.7억 달러가 감소
- 서비스업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전 기간 중 35.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전년동기대비 7.1억 달러 증가
- 이 중 금융보험업과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2012년 4~12월 중 투자유치와 2013년 1~12월 중 투자유치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함에 따라 FTA 발효 이후 전 기간 동안 각각 3.3억 달러와 3.9억 달러가 증가
- 이와 달리 기타서비스업으로의 투자유치는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4~12월 중에 전년동기대비 2.0억 달러가 감소하였고 FTA 발효 이후 전 기간 동안에는 5.5억 달러가 감소
- 전기·가스·수도·건설의 경우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4~12월 중 5.2억 달러가 유치되어 FTA 발효 이후 투자유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2년 당해연도에만 발생
- 한편 산업별 투자의 경우 운송기기와 부동산임대업에서와 같이 특정기간에 투자유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이 나타남.
- 이들 산업에 대한 2013년 투자유치는 1~3월에, 화학, 기타기계, 운수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4~12 월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일부 미국 기업이 해당기간에 대규모로 한국으로의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10. 한국의 대미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신고금액기준)

	201	0년	201	11년	201	2년	201	.3년	발효이후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전 기간
전 산업	1,975	1,935	2,372	1,904	3,674	3,247	3,525	1,824	6,773
농림수산광업									
제조업	398	389	1,092	783	1,804	1,539	1,187	433	2,726
섬유			2	2	11	11	2	2	13
화학	41	41	184	123	170	66	210	210	276
금속	10	10	5	5	201	151	6	5	157
기타 기계	4	3	61	53	45	41	176	176	218
 전자	222	216	744	539	225	222	55	26	277
운송기기	13	12	14	13	897	893	734	10	1,626
기타 제조업	108	108	79	46	255	155	4	4	159
서비스업	1,573	1,543	1,275	1,116	1,354	1,192	2,339	1,390	3,530
도소매업	63	53	59	57	228	178	81	75	258
운수 및 음식숙박업	35	31	5	5	7	6	243	243	249
금융보험업	302	300	138	95	382	361	405	262	767
부동산임대	771	765	643	635	403	403	1,194	426	1,597
비즈니스서비스업	85	77	132	114	323	237	362	334	599
기타 서비스업	319	316	297	210	11	7	53	50	60
전기·가스·수도·건설	3	3	5	5	517	517			517

주 1) 발효 이후 전 기간은 2012년 4월~2013년 12월 투자를 의미함.

- 한국의 대세계 및 대미국 해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기간(2012년 4월~2013년 12월) 동안 각각 432억 달러와 73억 달러를 투자하여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참고).
-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는 FTA 발효 이후 모든 분석기간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2012년 4~12월 중 투자는 18.5%, 2013년 4~12월 중 투자는 39.8%, 1~12월 중 투자는 22.5%, 2012년 4월~2013 년 12월 중 투자는 17.2% 감소
- 이러한 한국의 대미국 투자감소는 대세계 투자감소와 비교하여도 크게 나타남.
- 모든 분석기간에서 한국의 대미국 투자 감소율이 대세계 투자 감소율보다 높음.
- 이는 2011년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됨.
- 2011년 한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유로존 위기 심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유럽 및 중남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대신 자원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8)

²⁾ 빈셀은 투자금액이 없거나 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통계(http://www.mk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2014년 3월 6일 접속).

⁸⁾ 기획재정부(2012), 「11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2. 16).



표 1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기준)

	,								
	2010년		2011년		201	2년	201	발효이후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전 기간
대세계	24,594 (20,0)	21,235 (23.0)	27,768 (12.9)	21,426 (0.9)	25,370 (-8.6)	19,104 (-10.8)	24,145 (-4.8)	18,489 (-3,2)	43,249 (-11,7)
대미국	3,403 (-4.8)	2,854 (18.0)	5,983 (75.8)	4,773 (67.2)	4,425 (-26.0)	3,890 (-18.5)	3,428 (-22.5)	2,341 (-39.8)	7,318 (-17.2)
비중	13.8	13.4	21.5	22.3	17.4	20.4	14.2	12.7	16.9

- -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3)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대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http://keri_koreaexim.go_kr/, 2014년 3월 6일 접속).
-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기간(2012년 4월~2013년 12월)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감소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감소에 의한 효과임(표 12 참고).
- 농림수산광업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전 기간 중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분석기간에서 전년동기대비 투자가 감소함.
-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 광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사료됨.
- 제조업의 경우 2013년을 제외한 이외 분석기간에서 FTA 발효 이후 전년동기대비 투자가 증가함.
- 전자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4~12월 중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7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12월 중 투자가 4.5억 달러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이후 전 기간에 대한 투자는 3.5억 달러 증가함.
- 서비스업의 경우 FTA 발효 이전 30억 달러 정도가 미국으로 투자되었으나 발효 직후인 2012년 4~12월 중 투자가 8.8억 달러 감소함에 따라 발효 이후 전 기간 투자는 22.2억 달러 감소함.
- 특히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4~12월 중에 전년동기대비 7.3억 달러가 감소한 이후 2013년 1~12월 중에도 2.1억 달러가 감소하여 발효 이후 전 기간 동안 21.6억 달러가 감소
- 이외 도소매업 역시 FTA 발효 직후 전년동기대비 2.9억 달러의 투자가 감소하여 발효 이후 전 기간 동안 7.8 억 달러의 투자가 감소

표 12. 한국의 대미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투자금액기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효이후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전 기간
전 산업	3,403	2,854	5,983	4,773	4,425	3,890	3,428	2,341	7,318
농림수산광업	138	137	2,115	1,925	1,983	1,617	995	637	2,611
제조업	370	253	530	411	831	741	455	368	1,196
섬유	7	6	9	8	12	9	29	25	39
화학	48	25	53	42	54	44	17	17	61
금속	67	53	51	46	43	38	66	62	104
기타 기계	19	16	33	30	55	36	24	20	6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효이후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1~12월	4~12월	전 기간
전자	121	83	275	199	595	565	147	130	712
운송기기	54	45	42	33	34	26	96	54	122
기타 제조업	55	24	67	54	38	23	75	60	98
서비스업	2,732	2,329	3,245	2,363	1,550	1,481	1,872	1,236	3,354
도소매업	420	387	1,421	670	401	376	657	414	1,033
운수 및 음식숙박업	62	43	93	71	98	92	50	43	141
금융보험업	1,603	1,584	1,195	1,145	417	416	205	89	621
부동산임대	92	46	30	29	21	17	358	320	375
비즈니스서비스업	262	44	343	323	466	456	460	278	916
기타 서비스업	293	225	163	125	146	126	142	91	267
전기·가스·수도·건설	163	136	93	74	62	51	106	99	157

주: 발효 이후 전 기간은 2012년 4월~2013년 12월 투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http://keri.koreaexim.go.kr/, 2014년 3월 6일 접속).

5. 규범 분야

■ 한·미 FTA 협정의 규범 분야 중 가장 크게 현안이 되었던 세부 분야 중심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특히 한국의 TPP 참가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후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봄.

표 13. 주요 규범분야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내용 정리

분야	신규허용	내 용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자
의약품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에 대한 특허권 정보가 일정한 기준 충족시 특허목록 등재·공고 허용	약사법, 법률 제11118호	2012.3.15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특허권자에의 통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특허목록 등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6호	2012.3.13
자동차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적용세율을 발효 해에는 8%부터 연차적으로 인하, 발효 3년 차인 2015.1.1 이후 5% 적용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1106호	2012.3.15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액인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3단계로 축소 및 배기량 기준당 세액 인하	지방세법, 법률 제11108호	2012.3.15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대형·초대형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형· 중형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0호	2007.12.31
		및 차종별 평균배출허용 기준 및 평균배출량 산정방법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9호	2012.2.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저작권법,	2011.7.1



분야	신규허용	내용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자
지적 재산권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법률 제10807호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01호	
	일시적 복제의 복제권 인정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추가 및 공정이용 기준 규정	저작권법, 법률 제11110호	2012.3.15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 금지 및 예외규정 마련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01호	2011.7.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및 유형별 면책요건 규정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01호	2011.7.1
	특허 존속기간 연장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허용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2012.3.15
금융	개인정보 처리원칙 규정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규정 및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0465호	2011.9.30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금지 및 사고발생시 과징금 및 징계 등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1990호	2014.8.7
기술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95호	2013.6.2
	유기식품 인증제도 도입	외국의 인증제도 인정 시 동등성 인정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35호	2014.1.1

가. 의약품 분야

- 한·미 FTA 체결 후 의약품 분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미국 측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로, 특히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비됨.
-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복제의약품 생산 업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신청한 모든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의약품의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에 대한 사항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중임.
-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해 복제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며, 특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또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6호, 2011. 12. 2 일부개정)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특허권의 대상과 기준을 의약품의 물질, 제형, 조성물 또는 의약적 용도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여 특허권자의 독점기간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 (평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복제품목의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되므로 허가 심사과정이 현재보다 길어지거나 복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늦어져 복제의약품의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으나, 산업계에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오리지널(신약)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 복제 의약품이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판허가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허기간 만료 후 출시를 위해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복제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바 있는 특허권자의 독점기간 연장을 위한 '에버그리닝 (evergreening)'⁹⁾ 방지를 위하여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상에 특허목록에 등재되는 특허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함.

나. 자동차 분야

- 한·미 FTA 협상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분야 중 하나는 자동차 세제 분야로,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자동차 관세 철폐 외에도 자동차 국내세제 개편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한·미 FTA 제2.12조에서는 차량의 배기량 기준 세율을 기존 3단계에서 배기량 1,000cc 기준으로 2단계 개편하기로 합의함.
- 동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법률 제11106호, 2011. 12. 2 일부개정)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효한 해에는 8%, 발효 다음 해에는 7% 등 발효한 후 3년이 되는 2015.1.1 이후에는 5%로 연차적으로 세율이 인하됨.
- 또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108호, 2011. 12. 2 일부개정)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기존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기준당 세액을 인하하여 적용하게 됨.
- 자동차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양국은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⁹⁾ 특허권자가 독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동일 의약품에 특허를 계속 추가할 가능성, 즉 에버그리닝(evergreening)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도 2003년 Hatch-Waxman법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개정을 통해 등재하는 특허 범위를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국제기준에 조화시키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미 FTA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챕터의 부속서한 '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에서 한국의 초저배출 차량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시장에서의 차량 판매대수 기준(4,500대 및 1만대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게 각기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제작사별 자동차 판매량 및 총판매차량의 배출가스 평균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California LEV II Regulations)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환경부령 제270호, 2007. 12. 31 전부 개정) 2009년 이후 적용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의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3.5g/kwH → 2.0g/kwH), 소형 및 중형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나누어 규정하고 이 중 자동차 제작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은 2009년 이후 0.02g/km을 준수하도록 함.
-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 및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환경부령 제449호, 2012. 2. 3 일부 개정)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배출량¹⁽¹⁾이 평균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평균 배출허용기준과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규정함.
-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47g/km, 4,500대 초과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7g/km의 평균배출량 기준 적용.¹¹⁾
- (평가)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으로 인해 특소세 면제 폭이 확대되고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세율 인하로 인해 소형차 및 대형차에 대한 내수를 촉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수입차의 경우 14% 안팎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게 되어 미국산 중형 승용차뿐 아니라 국산 중형 승용차도 가격 인하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반면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세수는 연간 1,000억 원씩 줄어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더욱 악화될 전망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휘발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에서 주행세의 비율을 인상하여 세수 부족분만큼 각 지자체를 보전해주는 방침을 추진해옴.
- 자동차 제작사 규모별로 적용되는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력과 친환경 기술을 법제도의 강화를 통해 끌어올린다는 긍정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으로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음. 반면, 국산 승용 디젤 차량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수입자동차 제작사의 고효율 디젤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수입차의 판매 증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대부분 일본 및 독일산 친환경 차량으로 미국산 차량에 대한 수입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임.

¹⁰⁾ 평균 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는 자동차 제작사 규모별로 달리 규정된 평균배출량을 맞춰야 하지만 여러 단계의 배출기준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는 생산차종에 어떤 배출량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유연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제도임.

¹¹⁾ 휘발유 및 LPG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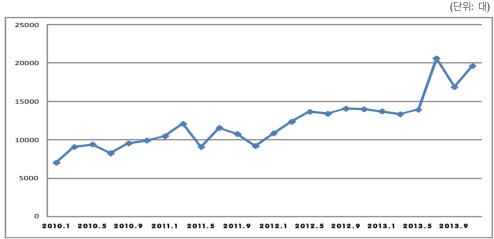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 동향 (2010~13년)

주: 한국자동차산업협회(www.kama.or.kr) 통계자료 재구성.

다. 지적재산권 분야

- 지적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수준의 강화를 요구해왔던 분야로서, 핵심 쟁점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조항 및 의약품 특허권 관련하여 특허 존속기간의 연장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 한·미 FTA 협상 결과 합의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한·EU FTA협정이 먼저 잠정발효 (2011. 7. 1)되면서 한·EU FTA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 개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음반 및 실연 등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됨.
-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우선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여 성격이 유시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단일법으로 관리하고, 2012. 3. 15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 개정)에서는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을 추가하였으며, 대신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허용함.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이용'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
- 한·미 FTA 협상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access control)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시에 이에 대한 7가지 한시적(3년) 예외 규정을 둠.¹²⁾

^{12) 7}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 연구,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 접근 방지, (3)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 및 무력화, (4) 국가의 법집행,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바, 협정 발효 전 한·EU FTA 이행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13) 발효일에 맞추어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 12. 2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또한 특허당국의 특허 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져 특허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¹⁴⁾ 이 외에도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 법정손해배상제도, 정보제공 명령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등한 · 미 FTA 이행뿐 아니라 국내 지재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짐.
- (평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간 협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합의사항은 대부분 국내 법제도상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적인 파급효과의 파악이 가능할 것임.
- 비록 단기적으로는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관련 산업의 로열티 지급 증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지재권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혁신과 창작에 대한 인 센티브가 높아져,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보다 강회된 저작권 보호환경으로 인한 문화산 업의 발전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라. 금융서비스 분야

-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한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음. 최근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TPP 가입에 앞서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금융자료의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에 대한 국경간 무역에 합의한 바 있으며,¹⁵⁾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기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및 기술설비의 위치 요건 등에 대하여는 미국 측과 유사한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음.¹⁶⁾

합법적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5) 도서관 및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여부 결정, (6)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7)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검사·조사 또는 보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¹³⁾ 개정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2011. 6. 30 일부 개정), 2011. 7. 1 시행.

¹⁴⁾ 개정 특허법, 법률 제11117호(2011. 12. 2 일부 개정), 2012. 3. 15 시행.

¹⁵⁾ 한·미 FTA 부속서 13-가 제6항 가호 및 나호. 그 외에 증권,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 시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 등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기로 함.

¹⁶⁾ 한·미 FTA 제13장 부속서한, 정보의 이전.



- 최근 일부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바,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침에 따라 향후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의 수집, 활용기간 및 제3자 정보제공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보유출 사고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2014년 2월 말 발표), 2015년 출범 목표로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임.
 - 관련 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¹⁷⁾ 2014년 8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최근 개정하여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며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대표 및 책임자 징계 권고 등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¹⁸⁾
- (평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중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합의사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4년 3월 14일 이후 이행 예정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임.
- 단 국내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은 국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들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어 관리해 왔었으나, 한국을 제외한 기타 아·태 지역을 상대로는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거점국가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두고 금융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 이에 따라 향후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해외에 있는 거점지역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비한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접근, 적정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 기타 규범 분야 이행상황

- 한·미 FTA 협상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지목된 유기식품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이 정비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59호, 2012. 6. 1 전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동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¹⁷⁾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0465호(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¹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1990호(2013. 8. 6 일부 개정), 2014. 8. 7 시행 예정.



-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여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동등성 협약 체결의 근거규정을 마련함(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¹⁹⁾
- (평가)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동 제도를 통해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위한 동등성 인정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맺음말

- 발효 2년차에 접어들면서 한·미 FTA가 양국간 상품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산업별 맞춤형 활용대책을 수립하여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22개월 동안 對미 수출입은 각각 발효 전 동기대비 12.16%와 -5.51% 변화했으나, 한·미 FTA의 효과는 각각 18.18%와 14.0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발효 1년차 효과에 비해 발효 2년차에 들어 교역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어 양국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한·미 FTA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요인별 분석결과, 對미 수출은 화학, 금속, 기타기계에서는 주로 관세 외 효과가 전자와 자동차, 부품에서는 관 세효과가 크게 나타나 산업별로 차별화된 활용대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를 감안하면, 한·미 FTA로 인한 수출입 증가는 양국간 수출입 물량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수출입 품목 다변화와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걸쳐 양국간 교역하는 품목 수가 각각 210개와 268개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뿐 아니라 외연적 확장 (extensive margin)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교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도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¹⁹⁾ 단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외국 인증을 받아도 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를 제정(2013. 11. 14)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은 62.2%, 수출은 47.7%에 그치는 데다 산업별로 편차가 커 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한·미 FTA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도의 선진화와 최근 활발한 글로벌 통상규범 재편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치원에서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 개방 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국내적으로는 법률분야 외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관측되지 않으나 서비스 교역은 운송, 여행, 지재권, 기타사업 등 분야에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이며, 개방일정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제고해야 함.
- 한·미 FTA로 인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실적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주로 운송기기와 금융보험, 비니지스 서비스업에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미·EU FTA) 등이 국제통상질서 변화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한·미 FTA가 이 협상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운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미 FTA 이행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우려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마련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음. KIEP